제 5 장 이사와 이사회

제 24 조 (이사의 정원 및 선임)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16 명 이내로 한다.

-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③ 본 회사는 이사 선임시 상법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본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(性)으로 구성하지 아니한다.

제 25 조 (이사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.

②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본 회사에서 6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본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각각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26 조 (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)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.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.

제 27조 (이사의 보선)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 24 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28 조 (대표이사) 이사회의 결의로써 1 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각기 회사를 대표한다.

제 29조 (회장 등의 선임과 직무)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.

②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 및 상무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29 조의 2 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 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 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

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조(경업금지), 제 397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0 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.

제 31 조 (이사회 결의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.

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4. 기타 법령,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에 의 위임이 금지된 사항
- ② 이사회는 제 1 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 32 조 (이사회의 결의방법)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단, 제 34 조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결의내용과 다른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33 조 (이사회의 의사록)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안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

제6장 위원회

제 34 조 (위원회)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.

- 1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- 2. 감사위원회
- 3. 경영위원회
- ② 본 회사는 효율적인 회사의 업무수행과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제 1 항의 위원회 이외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③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 30조 제 2 항에 따른 이사회소집권자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- 제 35조 (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) ① 본 회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.
-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- 제 36 조 (감사위원회) ①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③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제 37 조 (경영위원회) ① 본 회사는 상임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- ② 경영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③ 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- ④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한다.
- 제 38 조 (고문, 상담역)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 또는 상담역을 둘 수 있다.
- 제 39 조 (지배인)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배인을 둘 수 있다.